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252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이훈기・이광희・민병덕

김태선 • 정을호 • 김교흥

김태년 • 황 희 • 박희승

이병진 · 이재강 의원

(119]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피공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터넷 공고 등 이외에는 공탁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공탁사실을 통지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이를 다시 통지해줄 때까지 공탁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형사공탁사실을 재판 직전에야 인지하게 되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변론 종결 기일 직전에 공탁이 이루어지는 소위 '기습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곤란하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습 공탁의 폐해를 막고,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 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이를 통지받은 법원은 통지받은 공탁사실을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제1항).
- 나.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 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함(안 제5조의2제4항).
- 다. 공탁을 통지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전화·컴퓨터 통신·우편물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은 공탁사실을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5항).
- 라. 형사공탁에 대해 법원이 의무적으로 피해자측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6항).

법률 제 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해당"을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 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형사공탁 내용을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또는 우편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고지하여야 한다.
- ⑥ 법원은 제5항에 따라 고지한 형사공탁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
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u>해당</u>	<u>변론</u>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	<u>종결 기일 10일 전까지 해당</u>
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
	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
	<u>지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통지
	받은 형사공탁 내용을 전화(문
	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또
	는 우편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탁자 또
	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
	<u>여야 한다.</u>
<u><신 설></u>	⑥ 법원은 제5항에 따라 고지

한 형사공탁에 대하여 대법원

 교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 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⑤(생략)

 ②・⑧(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